

IT/SW의 규제개선

정부가 모바일,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는 IT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저해하고, IT와 타 산업간 융합을 지연시키는 각종 IT·SW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하였다.

지경부는 조 석 성장동력실장 주재로 '10.4.13일 「IT·SW 규제개선 민·관합동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 위원회에는 KT 김영환 부사장, 신경철 유진로봇 대표, 이원우 서울대 교수, 이감열 전자정

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함창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원장 등 업계·학계·기관 등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근 IT산업 트렌드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IT·SW 규제개선 발굴계획과 체계적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가 IT·SW 규제 및 제도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 배경은, 우선, 최근 스마트폰, 3D 영상 등 신개념의 IT 신기술이 등장하고, 타 산업의 융합현상으

[유형별 규제]

- ①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기상·교통·입찰·채용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DB에 대한 규제 개선, 모바일 광고시장 활성화
- ② (국내에만 있는 역차별적 규제)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게임 사전심의제 개선, 사이버 망명과 국내기업 역차별 방지를 위해 게시판 본인확인제 개선, 모바일 분야에 사용이 불편한 액티브 X기반의 스마트폰 금융결제 개선
- ③ (IT와 타산업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 u-Health 단말 및 원격진료 대상에 대한 규제 개선, LED 전자현수막 규제 개선, 헬스케어 의류 규제 개선
- ④ (규정이 있지만 해석이 모호한 규제) 웹 사이트 회원탈퇴절차 명문화, 금융권의 종이문서 관행 개선, 가짜백신 규제 및 관행 개선

로 인해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제도나 관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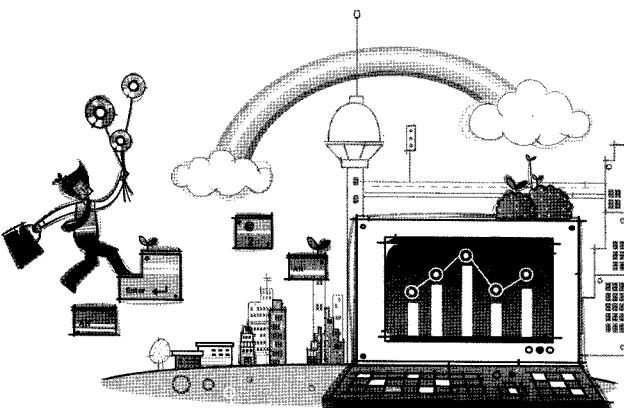
아울러, 이러한 규제들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IT 경쟁력을 갖게 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의 IT기반은 세계 최고로 ICT개발지수는 ('09) 2위 → ('10) 3위이고, 한국의 IT환경 및 접근성은 저조해 ICT 접근지수는 ('09) 12위 → ('10) 14위이다.

그간 정부는 급변하는 IT 분야의 환경변화를 수용하여, 지경부와 방통위 출범('08.3월), 정보통신관련 법령 정비 및 지원기관 통합('09.8월), IT/SW 정책비전 수립 등 IT 재도약을 위한 기본틀을 정비하였다.

IT Korea 미래전략('09.9월), SW 강국 도약전략 ('10.2월) 등 수립·발표하였으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IT 홀대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국민과 시장의 불신이 상존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IT 강국으로 만든 기업의 창의성과 국민의 역동성을 모바일과 SW, IT융합 분야에서도 발휘되도록 유도하고, IT 조직개편 및 정책비전 수립의 취지 및 효과를 IT 업계 전반으로 구석구석 확산하기 위해 규제개선에 본격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동 위원회는 4월말까지 ICT융합, 소프트웨어, 인터넷, 정보보안, 전자거래 등 IT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직·간접적 규제나 관행을 대대적으로 발굴한다.

6월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및 규제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급성·중요도·전문성 등 유형에 따라 구분, 국경위·규개위 상정 등 맞춤형 해소전략을 추진한다.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모바일 빅뱅을 일으키는 스마트폰이 유선 및 HW 중심으로 발전해온 우리 IT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밝히고, 출발은 늦었지만 무선 인터넷 강국·SW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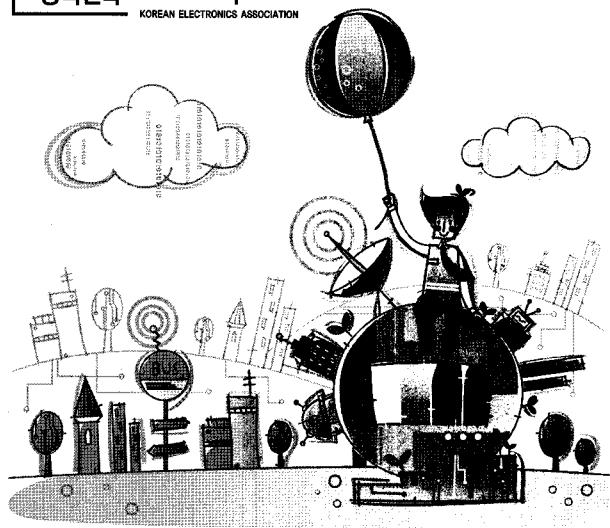
아울러, “정부는 기존 규제 때문에 또는 규정이 있지만 불분명해서 신산업창출과 융합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규제를 법·제도적 장치로 상시 해결하기 위해 금년 중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도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하였다. KT는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하고, 다양하고 혁신적 컨텐츠 공급을 위해 게임물 사전심의제 등 컨텐츠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10여년 전부터 u-Health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세계시장 선점에 실기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기존 네온전광판에 비해 70% 에너지절감효과를 갖는 LED 전자현수막 등 IT 융합 신제품이 관련 규제 때문에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였다.

한편, 지경부는 기존 인터넷이 모바일과 소셜 네트



워킹과의 결합으로 빠르게 변하는 시점에서 스마트 폰이나 트위터 이용자들의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도 집중 발굴하기로 하고,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며, 블로거나 트위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IT/SW의 규제 개선에 대한 업계의 건의 과제이다. 첫 번째, 신규 비즈니스 창출 저해 규제이다.

공공정보 DB 활용제한 개선에 대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상·교통·지리·입찰·채용 정보 등 공공 DB 활용 근거가 미흡하다. 창의적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유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공익목적과 민간개방시 효율성을 형량하여 개선방안 마련할 것이다.

공공기관 DB 활용률을 보면, 서울버스 앱 사례로 한 고등학생이 개발한 “서울버스 앱”은 GPS를 활용해 서울과 경기지역의 버스도착 시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다.

경기도가 공공정보의 무단이용 명목으로 정보차단 조치를 취했으나, 이용자들의 반발로 경기도의 서울 버스 앱 차단조치는 이틀만에 철회되었다.

주유소 앱 사례로 석유공사의 기름값 정보와 스마트폰의 GPS정보를 결합하여 반경 1~10킬로미터 이내의 주유소와 가격 정보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공공정보의 무단사용, 저작권, 문제발생시 책임

소재 등 문제점 내포하여 개발자가 별도의 법률자문을 받았다.

뉴욕시 사례로 미국의 뉴욕시의 애칭을 “Big Apple”이 아니라, 이제는 “Big Apps”라고 해야 할 판이다. 뉴욕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통정보를 개발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총 2만불 상당의 어플리케이션 컨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모바일 광고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소재지 인근의 맛집, PC방 등 유용한 정보를 수시로 받고 싶어 하지만, 위치정보보호법 관련 규제로 통신업체가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A사는 모바일 광고서비스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관련 규제로 인해 동 서비스의 법률검토 단계에서 취소하였다. 이용자 편의 및 영업기회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국내기업 역차별 규제이다.

게임 사전심의제로 모든 게임들은 서비스 등록전에 반드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국내 규제 때문에 사전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외국 업체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국내업계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게임을 분류하는 방안마련 필요하다.

애플은 모든 게임의 사전심사를 요하는 국내 규정 때문에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고,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규제를 우회한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도 한국에서의 게임 카테고리 차단하는 등 국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스럽게 영업한다.

애플의 15만개의 어플리케이션 중 18%이상 (28,500개)이 게임인데, 이는 게임업체에 비해 국내 게임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내 1인 창조기업 활성화에도 저해된다. 메모장과 일정관리를 결합한 어셈노트를 올려 6개월간 8억원을 벌어들인 사례에 비해 잠재력이 더 큰 게임분야의 매출기회 상실의 원

인으로 지목된다.

지리정보 이용에서 미국, 일본 등은 구글을 통해 고해상도의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저해상도 제공한다.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한도내에서 15cm급 고해상도 지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방향 논의 필요하다.

국내기업은 50cm 저해상도 규제 및 보안시설 위장처리 규제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국내 규제에 자유로운 구글어스는 15cm수준의 항공사진 지리정보 제공하고 보안시설 위장처리 규제도 잘 지키지 않고 있다.

국내 일부 네티즌 이용자중 부동산, 여행 및 환경 보호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어스를 애용하고, 내국인의 외국사이트 이용으로 국내 관련기업의 관련 비즈니스 기회 상실된다.

공인인증서 의무화로 모바일 뱅킹 및 전자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현행 규제로 기능장애 발생한다. 금융기관이 기존 MS의 Active X기반의 공인인증서와 다른 형태의 인증방식도 자율적으로 선택·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스마트폰의 경우 OTP(one time password) 또는 신용카드번호와 식별번호 등이고, 스마트폰 이용시

소액결제(30만원 미만)는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면제 ('10.3.31)이다.

온라인 서점 Yes24와 알라딘 등은 자사 홈페이지 메뉴에 스마트폰 페이지를 개설하고, 스마트폰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국내 신용카드회사들이 이를 비정상적인 결제로 보아 차단한 사례이다.

하나은행이 현재 스마트폰용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으나, 공인인증서는 MS Internet Explorer기반으로 받을 수 있어, 하나은행 어플 이용자들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전송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이용할 수 있다.

게시판 본인확인제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사진·동영상 등을 올릴 때 반드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여 국내 네티즌들의 사이버 망명을 유도하고, 국내 인터넷 기업을 역차별 하는 부작용 발생한다. 악성 댓글로 인한 폐해와 구글 등 외국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유튜브 사례와 인터넷 실명제를 보면, 구글은 “익명성이야말로 웹의 정신”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본인확인제에 반발하여 국내에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서비스를 차단한다. 일부 이용자는 국가설정을 한국 이외의 국가로 하여 우회하여 업로드하는 등 네티즌의 사이버 망명 러쉬라는 부작용 발생하는 것이다.

본인확인제 적용을 받지 않는 구글, 야후 등 외국 기업들은 국내규제를 피해 비교적 자유롭게 영업을 하는 반면, 본인확인제 적용을 받는 국내 인터넷 기업은 침해소지 있는 동영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 및 인력 소진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IT융합 저해 규제이다.

u-Health 활성화로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 불인정, 의약품 원격 판매·배송 금지, u-Health기기에 대한 이중 인증 등 문제로 u-Health 활성화가 요원한 실정이다. u-Health 기기는 식약청의 의료기기 인증과 전파연구소의 KC 인증 획득 필요하다.



원격진료 허용범위를 의료소외계층에서 만성질환자 모니터링까지 확대하고, 동일항목에 대한 이중검사 배제하는 방안 검토할 것이다.

LED 전자현수막으로, 기존 천현수막의 한계를 극복하고, 네온전광판에 비해 70% 이상 에너지절감효과가 있는 LED 전자현수막에 대한 법률규정 미비와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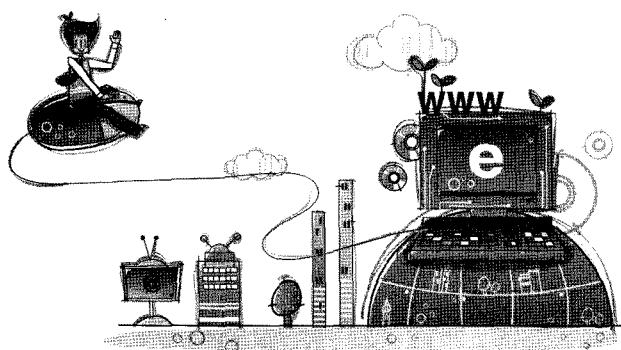
관련법에 디지털 광고매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설치 기준안을 마련 필요하다. 현재 LED 전자현수막(Ubiquitous Placard)은 서울시의 3개 구청에서 설치되어 운영·관리 중이다.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최소화, 도로 차량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 차량의 위치정보가 필요하나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정보를 차량 ID 정보로 변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 필요하다. 기존의 CCTV는 개인정보가 완전히 노출될 수 있는 교통정보 수집체계이다.

넷째, 규정이 있지만 해석이 모호한 규제이다.

웹사이트 회원탈퇴절차 명문화로 인터넷 탈퇴방법을 가입시보다 쉽게 하도록 규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여전히 탈퇴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의 유명 인터넷사이트는 회원가입은 첫페이지에 있으나, 회원탈퇴는 여러단계를 거쳐야만 가능하고, 신분증 사본 요구 등 복잡한 절차 요구된다. 탈퇴 메뉴를 첫페이지에 게시하고, 일정기간 후 자동 탈퇴하는 시점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하다.

금융권의 과도한 종이문서 관행으로, 금융업 분야는 가장 많은 종이문서를 발생시키는 업종으로, 금융거래 전산화가 성숙단계이지만, 종이 발생량이 많은 입출금 및 대출 등 여수신 업무는 여전히 창구를 통한 종이문서 기반(종이 생산·보관)에 머물고 있다.

금융권은 막대한 투자비용을 들여, 전자거래기본법의 요건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시설·장비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을 구축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금융위는 종이문서를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 상법 및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되는 경우, 단계적으로 원본폐기가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종이문서와 전자화문서의 이중보관·활용에 따른 부담 경감된다.

가짜백신 및 관행 개선으로, 가짜백신은 PC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사용자 PC에 설치되는데, 현재 대부분의 가짜백신은 동영상 사이트, 코덱, P2P 프로그램 등의 번들 형태로 업체들 간의 무분별한 제휴를 통해 설치된다.

현행법상 가짜백신을 정의하기 곤란하며, 일부 분석가가 다수의 가짜백신 배포지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가짜백신에 감염된 PC 사용자는 언제 가짜백신이 자신의 PC에 설치 되었는지 몰라 배포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

가짜백신 사례집 또는 가짜백신 기준안을 제정하고, 가짜백신의 빠른 기술적 동향을 사례집 또는 기준안에 정기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